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박재우

· 법무법인 정수 변호사

내년이면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있고 2017년 사법시험 2,3차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한국 법조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뒤돌아 보면 과도한 면접비중으로 인한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고비용저효율의 구조, 학벌주의심화 및 로스쿨간 교육의 균질성이 보장되지 않고 짧은 교육 기간등으로 인해 평균적 수준이 보장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데 있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런 로스쿨제도가 직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로스쿨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또는 기존 사법시험의 존치 등이 논의되어 지고 있다.

로스쿨측에서는 로스쿨일원주의만 주장하며 예비시험과 사법시험 양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이 존재할 경우 로스쿨 영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 우회경로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로스쿨의 유지존속 및 로스쿨교수님들의 직역보호가 주요한 기준이 될 이유가 없다. 어차피 로스쿨이든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제도이든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단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우회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경로의 구체적 필요성을 언급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기회균등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로스쿨의 본산
지인 미국이나 한국에 앞서 로스쿨을 받아들인 일본도 예비시험등 우회적
경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만 유독 로스쿨일원주의를
취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셋째, 현재 법학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한국에 약 70여개가 남아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법학부에서 4년이나 법
학을 배운 학생들이 그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로스쿨을 3년간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다시 다녀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예비시험
보다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 성적비공개 방식의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취업시 출신로스쿨
및 집안배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선
예비시험을 거쳐 다시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실력을 입증할 방법
이 없어 로펌등의 취업등에 있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 다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둘째, 사법시험제도와는 달리 로스쿨제도하에서는 변호사시험합격후 실
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균
질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재도 실무수습지를 찾지 못한 수백명의 사람
들이 대한변협에서 주관하는 강의만 들으며 지내는 등 부실한 실무수습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
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문제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사법연
수원과 연계되어 충실한 실무교육후 사회로 배출할 수 있어 부실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학벌주의 심화, 부실한 실무교육등의 문제점은 예비시험제도 도입만으론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사법시험은 수십년간 시행되어져 오면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거의 의심되지 않았으며 사법연수원만큼 충실한 실무교육을 시킬만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로스쿨측에서 연수원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공공성을 보완해왔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해서 적어도 평균적 자질이 보장되는 법조인들을 배출해오고 있는 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는 충분히 보완재로서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물론 평균적 자질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과정을 거친 법률전문가들이 로스쿨출신들과 경쟁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상호 경쟁하에서 배출되는 법조인들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